

#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점인정인턴 프로그램 안내

## (공학지식의 실무응용)

**(현장실습 운영 기준)**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(문화체험이나 스터디,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지양).

**(현장실습 운영 시간)** 현장실습은 휴게시간(1일 1시간 이상)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단, 실습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).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

**(학생보험 의무 가입)** 기업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·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,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(기업 멘토 배정)** 기업은 학생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(개인 혹은 그룹 멘토)를 배정하고, 학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, 학생의 출석 및 평가 관리를 한다. 멘토는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, 현장실습 성적을 기재한 인턴평가서를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**(학점 인정)** 방학 동안 4주 이상의 기업체 인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공학 지식의 실무응용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(현장실습만으로는 학점인정 불가함). 정규학기 수업시간에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공학지식 응용 사례를 발표하고,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의 학습방향 및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는다. 성적은 인턴보고서<sup>1</sup> 및 발표<sup>2</sup>, 기업 멘토가 작성한 인턴평가서<sup>3</sup>를 토대로 부여한다.

**(학생의 권리와 의무)** 위 조항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학생은 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구현내용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,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및 알고리즘의 내용을 인턴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. 학생은 본인의 사유로 더 이상 실습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업과 학교에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(현장 실사)** 교육부 지침에 따라, 학교는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고, 학생의 수행 태도 및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[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].